

# 99공유재산관리 2차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6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99. 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,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「'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2차변경계획안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①항의 규정에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함.

## 2. 주요골자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기준에 의거 작성된 "99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2차변경계획안"의 취득재산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미탄목욕탕 부지 매입 1,394㎡와 건물신축 354㎡입니다.

## 3. 관계법규 및 지침

가.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

나.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

다.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

# 총괄표 (7 - 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 단위 : 규, 천원 )

구분			합계			당초			금회(변경)분		
			건	수량	금액	건	수량	금액	건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	7	39,664	306,611	6	38,270	278,034	1	1,394	28,577
		건물 기타	1	354	400,000				1	354	400,000
	1)	토지	7	39,664	306,611	6	38,270	278,034	1	1,394	28,577
	매입 기타										
독	2)	토지									
	교환취득 기타										
기타	3)	토지									
	기타 기타	1	354	400,000				1	354	400,000	
처분	계	토지	11	2,040	150,884	11	2,040	150,884			
		건물 기타	2	260.07	10,622	2	260.07	10,622			
	1)	토지	11	2,040	150,884	11	2,040	150,884			
	매각 기타	2	260.07	10,622	2	260.07	10,622				
매각	2)	토지									
	교환매각 기타										
대부	토지										
	건물 기타										

## 9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( 7 - 2 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 단위: m<sup>2</sup>, 천원 )

번호	재 산 의 표 시			추 정 가 액	취득 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	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1- 1	답	미탄 창리 614-1번지	1,394	28,577	하반기	미탄 목욕탕 신축부지	미탄창리 지동혁	4-가-0
- 2	건물		354	400,000	하반기	미탄면 목욕탕 신축	신축	4-가-0

# 관 계 법 규 (발췌)

## 지방자치법

제35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
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7.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처분

## 지방재정법

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관리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84조 (공유재산의관리계획)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## 공유재산관리조례

제37조 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-처분에 관한사항.
2.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.
3.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

## '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

### 4. 재산의 취득 기준

가. '99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의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.

- 매입, 기부채납, 신축, 증축, 양여취득, 교환, 무상귀속 등

나.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.

-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
-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지
- 새로운 개발예정지로서 공공청사 예정지
-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
-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